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8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민형배 · 안도걸 · 조정식
조계원 · 김문수 · 이개호
최혁진 · 문정복 · 정준호
박지원 · 이성윤 · 김우영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2조제1항제1호 중 “住所”를 “住所 및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제35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53조제1항 중 “住所 또는”을 “住所 또는 전자우편주소나”로 한다.

제363조제1항 본문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를 “전자문서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지 또는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3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52條(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주식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株主의 姓名과 住所 2. ~ 3. (생략) ② (생략)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생략)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생략) 第353條(株主名簿의 效力) ① 株主 또는 質權者에 對한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株主名簿에 記載한 住所 또는 그 者로부터 會社에 通知한 住所로 하면 된다. ② (생략) 第363條(소집의 通告)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	第352條(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 ----- -----. 1. ----- 住所 및 전자우편주소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第353條(株主名簿의 效力) ① -- ----- ----- ----- 住所 또는 전자우편주소나 ----- --. ② (현행과 같음) 第363條(소집의 通告) ① ----- ----- -----

